

의안번호	제432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0월 4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정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2
----------	-----

발의연월일: 2023년 10월 4일

발 의 자: 이정범·김현문·박병천
박재주·박용규·유상용
이윅희 의원

1. 제안이유

충청북도 내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3주체(교원-학생-학생의 보호자) 간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을 기반으로 교원의 교육활동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교육감, 학교장, 교원의 책무와 보호자 및 학생 의무
(안 제4조 ~ 안 제8조)

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안 제9조)

마.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안 제10조)

- 바. 학교 내 출입 관리 등 안전 대책(안 제11조)
- 사.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감사수사(안 제12조)
- 아. 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안 제13조)
- 자.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
- 차.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등(안 제15조)
- 카.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안 제16조)
- 타. 실태조사(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3주체(교원·학생·학생의 보호자) 상호 간의 존중·신뢰·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교원을 말한다.
3. “교권”이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유아교육법」 과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말한다.
4.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말한다.
5. “학생생활지도”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와 법 제14제2항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2조제4호 및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이하“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6.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는 교원의 전문적인 교육활동 역량과 학생의 학습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원·학생·학부모의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원의 교육활동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3. 교원은 학생,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4.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 교원 보호와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2.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운영
 3.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교원·학생·보호자 대상 교육·홍보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 심리상담, 치료 등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
 5. 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처리 환경조성 및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관련 사실을 축소·은폐해서는 아니되며, 교원보호책임관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 및 대응
2. 피해 교원 보호와 치유·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3.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신고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상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조치 등 2차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 시행

5.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범죄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
6. 분쟁 발생 시 민원인 응대 및 갈등 중재
7. 학생·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8.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치

제6조(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2. 학교·학급 운영에 관한 업무
3. 교육 전문성과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자기계발
4.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보호자의 의무)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등의 학습자 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의도적·반복적으로 방해, 간섭, 거부하는 행위
2.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3. 교원에게 성적 언동이나 폭언 및 폭력 등을 하는 행위
4. 교원의 교육활동 중 무단 촬영, 녹화, 녹음, 유포 등의 행위

제9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 지도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학교장과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2. 교육활동 침해 피해 관련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형사상 소송 비용, 상해·상담·심리 치료비 등의 비용지원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와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이 제8조제2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교권 침해 행위 학생과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취할 수 있는 생활지도 보장 방안 마련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요청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 교권보호위원회 즉시 개최
 5.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운영
 6. 교육활동 공간 내 비상벨 설치, 영상 및 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보급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
 7.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
 8.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
- ② 교육감은 제1항 제2호의 교원 보호조치 및 교원에 대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제2항의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제5호의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 ① 교육감은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의 동의 없이 교원의 개인정보를 학생 및 보호자 등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시간 및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학생 및 보호자 등의 상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학교 내 출입 관리 등 안전 대책) ① 교육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방문객 출입 수칙을 마련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방문 희망자에 대하여 학교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4. 학교장 및 학교 출입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퇴거 요청 불응 시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감사수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감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에 대한 조사·감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감사 과정에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민원·진정 등에 대한 조사·감사·수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① 교육감은 폭언이나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민원처리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을 민원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 응대 일원화 체계 구축
2. 민원 유형별 응대 절차 및 처리 방식 등이 포함된 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보급
3. 민원인 학교 방문 사전 예약체계 구축
4. 민원인 상담 공간 마련
5. 제4호의 공간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6. 전화 민원 응대 교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송출 및 녹음시스템 구축
7.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민원처리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민원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3. 수업 시간 및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

④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반복·중복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민원인이 적법한 민원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원치유지원 센터의 기능과 함께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
2.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 예방·보호 관련 학생·교원·보호자 대상 교육·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4.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5. 그 밖에 교권 및 교육활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교원연수 교육과정에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대한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교육감은 본 조례를 준용하여 학교 등에서 교원과 함께 학생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그 밖의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2조(학습자)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개정 2021. 9. 24.>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보호자)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교원)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

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학생의 징계)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개정 2021. 3. 23., 2022. 12. 27.>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 12. 27.>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22. 12. 27.]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개정 2021. 3. 23., 2023. 9. 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21.]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3. 9. 27.>

[본조신설 2022. 12. 27.]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2012. 3. 21.>
5. 삭제<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3. 24., 2011. 7. 25.>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개정 2010. 3. 24., 2021. 3. 23., 2023. 9. 27.>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3. 24., 2011. 7. 25., 2021. 3. 23.>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신설 2011. 7. 25.>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개정 2010. 3. 24., 2011. 7. 25.>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11. 7. 25., 2012. 1. 26.>
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8. 3. 14.]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9. 27.>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9. 27.>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⑥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⑧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14조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①제15조 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3(특별휴가)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6.>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4. 16.>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6., 2019. 12. 10.>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6.>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15조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4. 16.>

② 관할청은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16조(실태조사)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9. 27.>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16조

제16조의2(실태조사)① 관할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및제18조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17조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6.>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6.>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 4. 16.>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 4. 16.>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

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9. 4. 16.>

⑨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16.>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4. 16.]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9. 27.>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9. 27.>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18조

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

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4. 16.>]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19조

제20조(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6. 2. 3.]

[제19조에서 이동 <2019. 4. 16.>]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

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6., 2019. 12. 10., 2023. 9. 27.>

1. 삭제<2023. 9. 27.>

2. 삭제<2023. 9. 27.>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0조

제21조(벌칙)제10조 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3. 23.>]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1조

제22조(과태료)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1조에서 이동 <2021. 3. 23.>]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22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2조

제23조(특별휴가)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3조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3에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4조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신설 2023. 9. 27.>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4.

16., 2023. 9. 27.>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16., 2023. 9. 27.>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4. 16., 2023. 9. 27.]

[제18조에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5조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6조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①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4. 16.,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4. 16., 2023. 9. 27.>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16조에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7조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8조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7조에서 이동 <2023. 9. 27.>]

[시행일: 2024. 3. 28.] 제29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조의4(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①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가.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부장관
나.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법 제15조 제5항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5항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관할청은 법 제15조 제5항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2조의3에서 이동 <2020. 6. 9.>]

□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1. 교원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제2항·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1항·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8. 12. 18.>
 -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 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2. 1. 26., 2021. 3. 23.>
[전문개정 2011. 9. 30.]

□ 사립학교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일부개정]

- 제54조의4(기간제교원)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

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3. 23.] [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023. 3. 23., 일부개정]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1	1
보통	3	3	3	낮음	2	2
낮음	2	2	2	없음	3	3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에 부가 조치 가능

-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5~7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2호	8~10	사회 봉사
연계선도	3호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교외	6호	전학
		7호	퇴학

【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상담)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

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

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훈계)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 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30호, 2023. 9. 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한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유아생활지도"란 유치원의 장(특수학교의 장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와 유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원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보상"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

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① 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제4조(생활지도의 범위)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조언)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상담)① 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⑦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의)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

을 할 수 있다.

④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훈육)①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⑥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상)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기타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원장은 이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관련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지원
 - 민형사상 소송비용, 상해·상담·심리 치료비
- 교육활동침해 학생과 교원 간 분리 조치에 필요한 비용
-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체
제 구축·운영비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 환경조성비
 - CCTV, 비상벨, 녹음전화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 등
 - 민원전용 상담실 설치
-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비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
 -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 예방·보호 관련 학생·교원·보호자 대상 교
육·연수 및 홍보
 -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2 관련조문

제9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
활동 지도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피해 관련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상해·상담·심리 치료비 등의 비용지원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학교 규칙에 근거하여 학교장과 교원은 제8조제2항의 교
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교권
침해 행위 학생과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교육방안 마
련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취할 수 있는 생활지도 보장 방안 마련

제10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 ① 교육감은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① 교육감은 폭언이나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민원처리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4. 생략)

5. 제4호의 공간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6. 영상 및 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보급

7. 전화 민원 응대 교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송출 및 녹음시스템 구축

제14조(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

2.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 예방·보호 관련 학생·교원·보호자 대상 교육·연수 및 홍보

(3. 생략)

4.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5. 그 밖에 교권 및 교육활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2028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금16,065,900천원

1) 산출내역(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교원배상책임 보험	상담·심리치료 비	상해치료비	교권법률지원 단	계
2024년	60,000	400,000	10,000	30,000	500,000
2025년	100,000	440,000	10,000	40,000	590,000
2026년	120,000	480,000	10,000	60,000	670,000
2027년	140,000	480,000	10,000	80,000	710,000
2028년	160,000	480,000	10,000	100,000	750,000
합계	580,000	2,280,000	50,000	310,000	3,220,000

* 향후 교원안심공제사업으로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육활동 침해 보호 조치비용 편입시 출연비용 등 포함

2) 산출내역(교원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비용·민원처리 환경 조성)
(단위: 천원)

구 분	안심번호서비스 (급당 50천원)	녹취전화기구축 (급120천원)	CCTV,비상벨 휴대용보호장치 구입 등 (교당 1,000천원)	계
2024년	434,700	1,043,280	513,000	1,990,980
2025년	434,700	1,043,280	513,000	1,990,980
2026년	434,700	1,043,280	513,000	1,990,980
2027년	434,700	1,043,280	513,000	1,990,980
2028년	434,700	1,043,280	513,000	1,990,980
합계	2,173,500	5,216,400	2,565,000	9,954,900

☞ 지원교: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사립 중·고·특수학교
(‘24학년도 513교(병설유포함), 8,694학급/ 행정과 배치계획에 따라 산출
금액 변동)

3) 산출내역(교육활동 침해 학생 교원간 분리조치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분리공간 마련* (리모델링비)	지도 인력** (연수비 및 수당)	계
2024년	500,000	50,000	550,000
2025년	500,000	50,000	550,000
2026년	500,000	50,000	550,000
2027년	500,000	50,000	550,000
2028년	500,000	50,000	550,000
합계	2,500,000	250,000	2,750,000

*연간 10교씩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

- 50,000,000원 × 10교 × 5년 = 2,500,000천원

** 퇴직교원, 예비교원, 상담전문가, 퇴직경찰, 학부모 등으로 구성 예정

- 연수비 100,000원 × 100명 × 5년 = 10,000천원

- 수 당 40,000원 × 100명 × 10회 = 40,000천원

4) 산출내역(교육활동보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단위: 천원)

구 분	교육활동보호 콘텐츠 제작	홍보비	계
2024년	38,000	3,000	41,000
2025년	5,000	20,000	25,000
2026년	5,000	20,000	25,000
2027년	5,000	20,000	25,000
2028년	5,000	20,000	25,000
합계	58,000	83,000	141,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100%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불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3,081,980	3,155,980	3,235,980	3,275,980	3,315,980	16,065,900	
공립 유.초.중.고.특수, 사립 중.고.특수학교	3,081,980	3,155,980	3,235,980	3,275,980	3,315,980	16,065,900	
재원 조달	3,081,980	3,155,980	3,235,980	3,275,980	3,315,980	16,065,9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081,980	3,155,980	3,235,980	3,275,980	3,315,980	16,065,900
	자체수입	3,081,980	3,155,980	3,235,980	3,275,980	3,315,980	16,065,900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